

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

의안 번호	4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'99.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'99년도분 시세(주민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자동차세, 사업소세)를 감면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함.

☐ 주요내용

-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, 수해로 인하여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자동차세 과세면제

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

□ 과세면제에 관한 법적근거

○ 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과세면제 대상 및 면제 세목

- '99.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자에 대해 시·세·중·주민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·사업소세·자동차세의 과세면제

면제세목	면제대상
'99 균등할주민세	- 수해로 인해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 자
'99 종합토지세	- 수해로 인한 사망피해 가족 - 건축물의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 - 농경지 유실·매몰 피해자 - 농가의 가축 피해자 - 수해피해 사업장
'99 토지분도시계획세	- 수해로 인한 사망피해 가족 - 건축물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 - 수해피해 사업장
'99. 8월 ~ 12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	- 수해피해 사업장
'99. 2기분 자동차세	- 수해로 인해 폐차된 차량 소유자

□ 과세면제 세부내역

- ① 인명피해(사망 및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)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
- ②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입은 자(그 건축물의 세입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그 건축물이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
- ③ 축사·비닐하우스에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
- ④ 농경지(전·답)에 침·관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유실·매물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와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
- ⑤ 가축의 폐사·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농지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의 범위)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,000수 이상의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유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
- ⑥ 사업장이 수해로 인하여 훼손(건축물의 경우 반파 이상,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훼손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)된 경우 주민세(균등할)·사업소세('99. 8월분 부터 '99. 12월분까지의 종업원할)·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(반파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,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훼손시설물의 부속토지 또는 부속토지의 유실·매물면적)과세면제
- ⑦ 어선·어망·어구 등이 유실·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
- ⑧ 자동차·건설기계 등이 수해로 침수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그 자동차·건설기계 등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말소등록 하는 경우 자동차세('99. 2기분)과세면제

호 우 피 해 현 황

☐ 인명 피해

(단위 : 명)

계	사 망	실 종	부 상	비 고
1	1			

☐ 건축물 피해

(단위 : 동)

계	유 실	전 파	반 파	침 수	비 고
2,937		18	166	2,753	

☐ 농경지 피해

(단위 : ha)

계	전	답	비 고
868.11	96.47	771.64	

☐ 가축 피해

(단위 : 두, 수)

계	소	돼 지	기 타	비 고
161,852	254	3,981	157,617	

☐ 축사 피해

(단위 : 동)

계	축 사	비 고
16	16	

☐ 비닐하우스 피해

(단위 : ha)

계	비닐하우스	비 고
6.60	6.60	

☐ 어선 피해

(단위 : 척)

계	어 선	비 고
38	38	

☐ 어망·어구 피해

(단위 : 통)

계	어망·어구	비 고
840	840	

☐ 공장시설등 피해

(단위 : 개소)

계	공 장	광 산	비 고
92	91	1	

※ '98. 8. 10. 10:00 현재

1989년 7월 31일 부속 4인까지

지역명 : 파주시

1999년 8월 10일 10시현재

-310-

지역명 : 파주시

-311-

1999년 8월 10일 현재		지역명 : 파주시		1999년 8월 10일 현재	
구분	지역명	금촌1동	금촌2동	합계	
이인명	주거	107	360	127	12652
인명	사후	107	360	127	12652
전	기	31.00	9.00	16.00	644.40
		1020.00	365.00	8.00	6772.10
		1091.00	374.00	86.00	7416.50
전	주거				18
					166
			97	127	2753
전	주거				27
					58270
					76200
					2737
					476800
전	주거				38
					15.12
					38
					15.12
					3728
전	주거				17.00
					0.20
					1.00
					26.47
					71.47
					328020
전	주거				31.00
					2.90
					16.00
					275.80
					672.10
					48.00
					7416.50
전	주거				32
					113274
					1
					1632500
					9
					220829
					56
					62745
					1440203
					100
					60853
					622146
전	주거				2
					27279
					40
					2555250
					14
					26.02
					207617
전	주거				192202
					5099
					1217039
					10
					1067106
전	주거				16550
					5948
					27
					17245192
					315000
					26883
					16
					813894
					5122006
전	주거				319100
					840
					150192
					2
					7285475
					300000
전	주거				500
					161852
					16
					1058165
전	주거				319928
					1451
					8752206
					18185406
전	주거				2637746
					2857313
					853874
					7703309

지방세 비과세 · 감면 추계액

□ 지방세비과세·감면 추계액	22,692건	232,010천원
○ 도 세(비과세)	814건	93,173천원
(취득세 59,971 등록세 32,548 면허세 654)		
○ 시 세(감 면)	21,878건	138,837천원
(주민세 61,928 자동차세 662 종합토지세 70,929 도시계획세 5,318)		

☐ 세입예산감소액	추계	166,789천원
☐ 도	세	27,952천원
(93,173천원 × 30/100(교부율) = 27,952천원)		
☐ 시	세	138,837천원

☐ 부족제원 확보대책

- 세입감소액 : 166,789천원
- 세입추가발생액 : 2,947,507천원
 - 에이에스이코리아(주) 주식이동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분 주민세(8. 2납부) : 2,520,088천원
 - ^에이스이코리아(주) 과점주주 취득세(8. 10납부) : 427,419천원
(1,424,732천원 × 30/100 = 427,419천원)

※ '98대비 지방세 비과세·감면현황

- '98년도 : 23,266건 332,145천 원
- '99년도 : 22,692건 232,010천 원(△574건 100,135천 원)

기타 세제지원실적

☐ 기한의 연장

- 기 간 : 8. 2 ~ 8. 31 사이 납기 ⇒ 마감일로부터 30일 연장
- 세 목 : 신고납부 세목
- 지 역 : 파주시전지역

☐ 고지유예

- 세 목 : 주민세(균등할)
- 기 간 : '99. 8월 납기 ⇒ '99. 10월 납기로 연장
- 대 상 : 61,827건 385,462천원
- 지 역 : 파주시 전지역

☐ 정수유예 및 채납처분 유예

- 세 목 : 채납세 전세목
- 기 간 : 8. 2 ~ 8. 31 납기 ⇒ 9. 30까지 연장
- 대 상 :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을 교부 받은 자
- 지 역 : 파주시전지역